

1. 세부 지원내용

<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>

- 동 사업은 MIT-ILP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본연구는 '26년 사전연구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기술성·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대상으로 '27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신청기업(중소기업)은 MIT-IL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술세미나, 워크샵, 기술협력, 인력 교류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선정기업은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
- MIT-ILP 프로그램 가입비용(80,000~95,000달러)은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
- MIT-ILP 프로그램은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연구개발기간(6개월) 이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.
 - 프로그램 이용 기간은 프로그램 가입 신청 및 심사 후 최대 1년간 이용 가능합니다.
- 신청기업(중소기업)은 참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되, 본연구에 진행할 연구개발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.
 - 단, 본연구 과제 지원 시 본연구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전연구 수행 완료과제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최종선정된 과제만 본연구 지원이 가능 하오니,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지원목적

- MIT-ILP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세미나, 워크샵, 기술협력, 인력교류 등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지원

□ 지원내용

-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MIT(매사추세츠공대)와의 공동 R&D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사전연구 프로그램(MIT-ILP) 지원

< MIT ILP(Industrial Liaison Program) 개요 >

- ◆ (목적) MIT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전하기 위해 창업,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(1948년 시작)
- ◆ (담당조직) MIT 산학협력단 내 대외협력부서에서 운영, 참여기업별 전담 PD(Program Director)가 배정되어 추진사항 등 관리
- ◆ (주요 활동) MIT 연구자와 공동 R&D 추진을 위한 기술상담, MIT 연구자 및 미국 스타트업 등과 교류 위한 세미나·워크샵·컨퍼런스·박람회 개최

- (협력 중개) 전문기관(기정원)이 MIT ILP 운영조직과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 지원
- (네트워크 구축지원) 미국 현지 및 국내에서 기술상담회/세미나/워크샵/심포지엄 등 정기 개최하여 상호 미팅 기회 제공
- (온라인 서비스 제공) ILP 전용 홈페이지 통해 MIT 연구자, 외부 전문가 등의 전문 기술자료 활용 서비스 제공
- (인력교류)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연구진 확보를 위해 MIT 연구자/학생 등과 리크루팅 행사 지원

□ **지원규모** : ('26년) 5.5억원, 5개 과제 내외

*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**지원유형 및 분야** :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,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內 자유공모 <참고3>

□ **지원자격**

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
* 매출액 기준(20억원 이상) 미적용

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

○ (위탁연구개발기관)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
□ **지원기간 및 한도** : 최대 6개월, 1.1억원 이내

| 구 분 |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| 최대 6개월, 1.1억원 이내 (예비연구+본연구 모두 수행시 최대 3년, 15억 이내) | 25% 이상 |

□ MIT-ILP 프로그램 주요 내용

- (참여기간) ILP 멤버십 가입 후 1년간 이용 가능
- (금액) 최소 80,000 달러 ~ 최대 95,000 달러

* 단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1.1억원)를 초과하는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

< ILP 프로그램 비용 8만달러 사업비 구성(안) >

| 구분 | 금액 | 형태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| \$73,340 (≒110백만원) | 현금 |
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\$6,660 (≒10백만원) | 현금 |
| 합계 | \$80,000 (≒120백만원) | 전액 현금 |

* 지급일 당시 환율 적용

□ 연구개발비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

<연구개발 기간 예시>

| 구분 | 연구개발기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| '26.7.1~'26.12.31 (6개월) |

- 선정평가 결과,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

*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25%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% 이상 현금 부담

□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(국제공동연구개발비)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계상
- (MIT-ILP 멤버십) 프로그램 가입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 가능하며, 연구개발비 전액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% 이상 부담 예외 적용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>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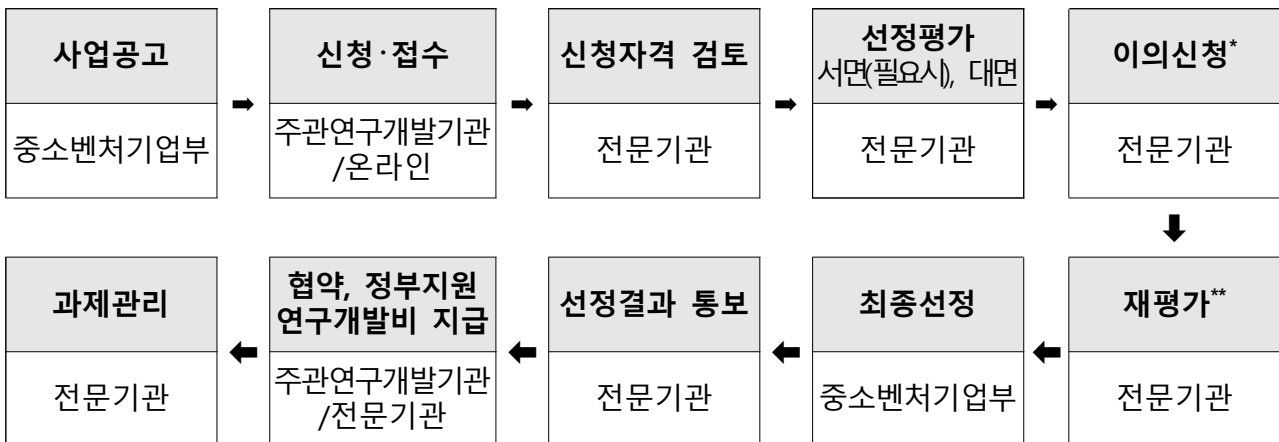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|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| | 총 연구개발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|
| | 국내기관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 | 현금 | 현물 | 합계 | |
|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| - | 110 | 10 | - | 10 | 120 |

- (지급 기준) 연구개발비 규모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, 협약서 상 지급 시기별 원화 지급액을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 지급 원칙
- (기존 인력 인건비)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% 초과 불가
 - * 단,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」 9.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.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
- (신규채용 인건비)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*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
 - *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 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
- (위탁연구개발비)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(현물포함)에서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% 이내에서 계상 가능
- (연구수당)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
 - * 연구수당 계상 한도 :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(현금·현물 인건비, 학생인건비, 미지급 인건비 포함(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)의 20% 이내 계상 가능
 - **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

- (외부 전문기술 활용비)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(현물 포함)의 40% 범위에서 계상 가능
- (연구실운영비)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*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·계획(붙임2)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
 - * 사무용 기기, 사무용 소프트웨어, 연구실 환경 유지 기기 관련 비용(사무용품은 제외)
- (간접비)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(현물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의 10% 이내로 계상 가능
 - * 간접비 고시 비율,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

2.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

- 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☞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


-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
- **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
□ 신청자격 검토

-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
 - *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[붙임1] 참고

□ 서면평가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참여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, 사업성, 기술개발역량, 파급효과,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

$$\text{서면평가 평점} = \frac{\text{서면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$

[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(안)]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기술성 (40) | ·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| 15 |
| | ·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의 적정성 | 15 |
| | · 지식재산권 확보·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| 10 |
| 사업성 (20) | ·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| 20 |
| 기술개발역량 (20) | ·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(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의 R&D수행 경험 및 수행 역량 등) | 15 |
| | · 연구윤리(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,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) | 5 |
| 파급효과 (15) | 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 | 10 |
| | · R&D의 기술적 파급효과 | 5 |
| 자금집행계획(5) | ·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| 5 |
| 합계 | | 100 |

□ 대면평가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참여계획서를 중심으로 참여계획서 내용,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기술성, 사업성,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, 기술개발 수행 역량,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선정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* 가·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<참고2> 참조

[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(안)]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
|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 (30) | · 공동연구 필요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R&D 효과성 | 15 |
| | · 국외 협력 필수 유형 적합성, 추진체계 적합성, IP 확보 가능성, 인력교류 등 협력 계획 현실성 | 15 |
| 기술개발 수행역량 (15) | ·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 역량(연구팀 구성 계획,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) | 10 |
| | · 연구윤리(연구개발비 부정사용,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) | 5 |
| 기술성 (30) | · 기술개발 목표, 내용의 수준,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| 10 |
| | ·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,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| 10 |
| | · 사전연구-본연구 간 연구개발 구성의 적합성 | 10 |
| 사업성 (20) | ·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, 방법, 일정,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| 10 |
| | 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 | 10 |
| 자금집행계획(5) | ·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| 5 |
| 합계 | | 100 |

□ 지원과제 확정

-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- 단, 상위 90%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고, 이의신청 결과 ‘可’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

□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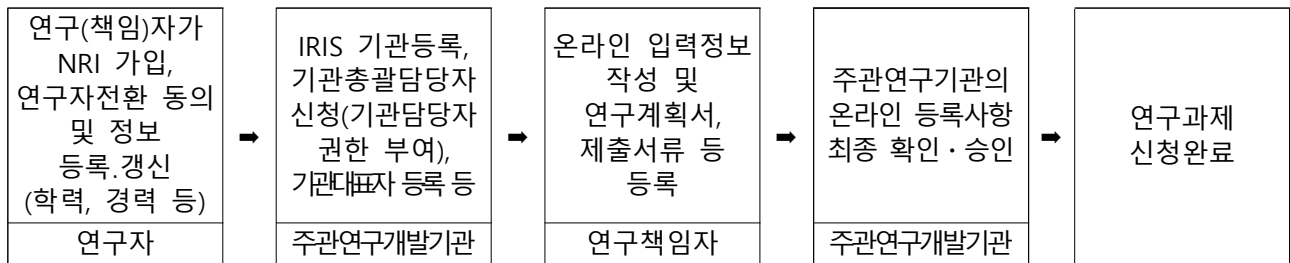
-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

3. 신청 및 접수 방법

- ☞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,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
- ☞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, 참여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만 가능
- * 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

□ 과제 접수기간 : '26년 5월 26일(화) ~ 6월 9일(화), 18:00까지

□ 신청 및 접수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참여계획서 신청·접수



□ 제출서류

- ☞ 참여계획서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, 그 외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- *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
- ☞ 세부과제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 제출

< 글로벌협력형R&D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제출서류 >

| 연번 | 서 식 명 | 제출서류 | | |
|----|--|------|-----|---|
| | | 필수 | 해당시 | |
| ① |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참여계획서 * 참여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26. 7. 1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 (본문1) 15페이지 이내 작성 * (본문2)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* (붙임1)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* (붙임2)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 계획 * (붙임3)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| 본문1 | ○ | |
| | | 본문2 | ○ | |
| | | 붙임1 | ○ | |
| | | 붙임2 | | ○ |
| | | 붙임3 | ○ | |

| 연번 | 서 식 명 | 제출서류 | |
|----|--|------|-----|
| | | 필수 | 해당시 |
| ② | 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 | ○ | |
| ③ |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○ | |
| ④ |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| ○ | |
| ⑤ |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-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(25년)*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(24년) 재무제표**를 근거로 판단 *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: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, 재무제표확인원(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) **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: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 | ○ | |
| ⑥ | 중소기업 확인서 *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| ○ | |
| ⑦ |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*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| ○ | |
| ⑧ |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| | ○ |
| ⑨ |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*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(확정)한 자료에 한함 *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| | ○ |

4. 기타사항

□ 기술료 징수기준

- 글로벌협력형 예비연구형(사전연구) 유형은 기술료 납부 예외

□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이 경우에도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수

5. 문의처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전 화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창업성장사업실) | 신청·접수, 참여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|
| 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·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| 해외협력기관 | MIT |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| chulmin.kweon@tipa usa.org |

- * **(유의사항)** 해외협력기관 관련 문의 시 검토기간,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소요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요망(문의 시 영어 활용)

☞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<http://www.iris.go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lfqd

참고1

ILP 프로그램

- (개요) 미국 매사추세츠공대(MIT)의 산학협력 프로그램(MIT Industrial Liaison Program)으로 MIT의 학문적 성과와 산업계의 상호 연계를 지원
 - * 기업·학계 간 협력과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MIT에서 설립·운영(1948~)
- (주요 활동) 기술협력·이전, 기술전략 상담, 교수·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 매칭 및 인력 교류·양성
 - (기술협력) MIT의 연구 및 기술 리소스에 접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이 MIT 연구자와 공동 프로젝트 진행
 - (네트워킹) 온·오프라인으로 기술 세미나, 워크샵, 컨퍼런스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·연구결과 공유
 - (인력양성) 인턴십, 채용 박람회, 스페셜 강의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간 인재교류 촉진과 인재 양성에 기여
 - (공동연구) 기업들과의 협력·공동연구를 위한 계약 및 프로젝트 관리 등을 지원하여 기술 협력의 원활한 진행 촉진
- 멤버십 가입 및 혜택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-|--|
| 신청/심사기간 | 수시 가입 신청 가능 → 약 1개월의 심사기간 소요 |
| 가입기간 | 최소 5년 이상이며, 1년마다 연장 계약 가능 |
| 멤버십 서비스 | 연구가 필요한 분야 인사이트 제공, 발굴된 니즈에 맞추어 MIT교수진 매칭 → 매칭된 교수들과 미팅·토론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 지원 MIT의 연구개발 결과를 컨퍼런스, 세미나, 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여, 매달 컨소시엄별 컨퍼런스 제공 |



참고2

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(증빙서류)

□ 가 · 감점

- (가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.(단,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)

<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>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|
|------------|--|----|---|
| 성과창출 강화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|
|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 책임자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|
| |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,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*중소기업R&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, 재 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| 2점 | 표창장, 상장 등 *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&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|
| |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,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| 2점 | 표창장, 상장 등 |
| |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* 조기완납 기준: 기술료 납부 1~3차년도 납부 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** 단,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| 1점 |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|
| 생태계 보완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| 1점 | 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|
|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| 1점 |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|
| |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*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) |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|
|----|--|----|---|
| |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|
|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에 소재하는 경우 | 2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|
| |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 종료 후, 기술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| 1점 |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|

<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가점 >

| 연번 | 가점 사항 | 가점 | 확인 |
|----|---|----|---|
| ① | 중소벤처기업부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」 '강소, 강소+단계' 선정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* 「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」 선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포함 | 3점 |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|
| ② | 최근 3년 이내 마이스터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(계약학과, 기술사관, 취업맞춤반)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| 1점 |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|
| ③ | 「K-유니콘 프로젝트(예비유니콘 특례보증)」에 선정된 중소기업 | 1점 | 예비유니콘 인증(선정)서 |
| ④ |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| 1점 |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|
| ⑤ |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| 1점 |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⑥ |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| 1점 | 벤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⑦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| 1점 |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⑧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| 1점 |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(MAIN-BIZ)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⑨ |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업 | 1점 | 환경표지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⑩ | 「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」에 선정된 중소기업 | 1점 |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⑪ | 「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」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| 1점 | 기술보호선도기업지정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⑫ | 「청년일자리 강소기업」에 선정된 중소기업 | 1점 |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
- (감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<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>

| 연번 | 감점 사항 | 감점 | 확인 |
|----|---|-----|---------|
| ① |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| 10점 | 전문기관 확인 |
| ② |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| 1점 | |

- (유의사항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참고3

글로벌협력형R&D(예비연구형) 부문 지원 분야

□ **지원 분야**

<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>

| 연번 | 기술분야 | 기술 예시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반도체·디스플레이 | • 첨단 패키징, 화합물 전력반도체, 고성능 AI 반도체 등 |
| 2 | 이차전지 | • 리튬이온전지, 차세대 전지(전고체 등) |
| 3 | 첨단 이동수단(모빌리티) | • 자율주행, 도심항공교통(UAM), 친환경 모빌리티 |
| 4 | 차세대 원자력 | • 소형모듈원전(SMR), 선진원자력시스템, 폐기물 관리 |
| 5 | 첨단 바이오 | • 디지털 헬스케어, 합성생물학, 뇌·뇌기능 활용 |
| 6 | 우주항공·해양 | • 발사체, 위성 탑재체, 달 착륙선, 심해저 탐사 |
| 7 | 수소 | • 수소 생산·저장·운송, 수소 연료전지 |
| 8 | 사이버보안 | • 암호기술, 네트워크 보안, 클라우드 보안 |
| 9 | 인공지능(AI) | • 초거대 AI, AI 반도체 설계, 엣지 AI |
| 10 | 차세대 통신 | • 6G, 위성통신 |
| 11 | 첨단로봇·제조 | • 인간-로봇 상호작용, AI 로봇, 가상제조 |
| 12 | 양자 | • 양자 컴퓨팅, 양자 통신, 양자 센싱 |

< 6대 전략 산업 및 12대 신산업 분야>

| 연번 | 기술분야 | 기술 예시 |
|-----|------------|---|
| A-1 | 인공지능 (AI) | • 데이터, 알고리즘, AI 모델 개발 등 |
| A-2 | 반도체 | • 시스템 반도체, 설계, 파운드리, 패키징 등 |
| A-3 | 양자·보안·네트워크 | • 양자 컴퓨팅/센싱, 차세대 통신, 사이버 보안 |
| A-4 | 로보틱스 | • 제조/서비스 로봇, 부품, 로봇 AI |
| A-5 | 모빌리티 | • 자율주행, 전기/수소차, 드론, UAM |
| B-1 | 생명·신약 | • 바이오의약품, 혁신 신약, 원료 의약품 |
| B-2 | 헬스케어 | • 디지털 헬스케어, 의료기기, 맞춤형 건강 관리 |
| C | 콘텐츠 | • 실감형 콘텐츠, 영상, 게임, 지식재산(IP) |
| D-1 | 방산·우주항공·해양 | • 첨단 무기 체계, 국방용 부품, 위성, 발사체, 해양 장비, 심해 탐사 |
| E-1 | 친환경 | • 친환경 소재, 재활용, 탄소 중립 기술 |
| E-1 | 에너지·핵융합 | • 차세대 원전, 수소 에너지, 에너지 저장 장치(ESS) |
| F | 센서·공정 | • 첨단 센서, 스마트 팩토리, 제조 공정 혁신 |